

보도자료

2012년 1월 16일(월)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 (750-2510)
통신정책기획과 김준동 사무관 (750-2514) jdkim@kcc.go.kr

“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” (“빌쇼크”) 방지한다
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. 올해 7월 시행
- 구체적 고지방법 등 위원회 고시 제정 추진

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전병헌 의원 대표발의)이 '12. 1. 17일 공포되었다.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·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.

※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('11.11.1.) → 국회통과('11.12.30.) → 국무회의 의결('12.1.10.)
→ 개정안 공포('12.1.17.) → 시행('12.7.18. 예정)

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,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.6배 증가하였으며,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·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.

※ '11.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,137만명(이동통신 가입자의 40.8%)

※ '11.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,289TB/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'09.11월의 341TB/월에 비해 53.6배 증가

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(이른바, “빌쇼크”)도 발생하고 있으며,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한편, “빌쇼크”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,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.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, 이동통신산업협회(CITA)가 연방통신위원회(FCC)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“빌쇼크”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.

◇ 美 이동통신산업협회(CTIA) 발표 “빌쇼크” 방지 가이드라인(‘11.10월)

- ① 데이터·음성·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
- ②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
- ③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고지서비스 제공

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◇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서비스 현황

- 음성·데이터·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 SMS 사전고지
- 데이터통화료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,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 등
- 데이터로밍요금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, 설정한도 초과시 서비스 차단 등

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·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·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. 끝.